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공연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의 안 번 호 1136

제출연월일: 2024. 6. 28. 제 출 자:정 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할 수 있는 역사문화권특별회계의 재원 및 사용 용도를 조례로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영상위원회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령상의 기준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등 3개 법률을 개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무형유산을 시·도무형유산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유산청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연법」 등 8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공연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1조(「공연법」의 개정) 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본문 및 단서 중 "보고"를 각각 "통보"로 한다.

제2조(「도서관법」의 개정) 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 제목 "(보고 등)"을 "(통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고"를 각각 "통보"로 한다.

제3조(「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호 중 "제32조제2항"을 각각 "제32조제4항"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 또는 제5항"을 "제1항·제2항 또는 제7항"으로 한다.

②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무형유산으로서 국가무형 유산으로 지정된 무형유산을 시·도무형유산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에는 시·도무형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국가유산청장에 게 그 취지와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국가유산청장은 필요한 경우 시·도 무형유산 지정 여부를 재검토하거나 내용을 수정하여 줄 것을 시· 도지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33조의 제목 "(보고 사항)"을 "(통보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고"를 "통보"로 한다.

제4조(「문학진흥법」의 개정) 문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 제목 "(보고)"를 "(통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보고"를 각각 "통보"로 한다.

제5조(「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4항 중 "보고"를 "통보"로 한다.

제61조제3항 중 "보고"를 "통보"로 한다.

제70조제4항 후단 중 "보고"를 "통보"로 한다.

제73조의 제목 "(보고 등)"을 "(통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중 "보고"를 "통보"로 한다.

제75조제3항 중 "보고"를 "통보"로 한다.

제6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개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 제목 "(보고)"를 "(통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보고"를 각각 "통보"로 한다.

제7조(「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7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입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관한 지원"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용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한다.

제8조(「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3제4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로 한다.

제28조의4제3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 · 도의 조례로"를 "해당 시 · 도의 조례로"로 한다.

제9조(「지역문화진흥법」의 개정) 지역문화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전단 중 "대통령령으로"를 "시·도 및 대도시의 조례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로 한다.

제22조제4항 중 "보고"를 "통보"로 한다.

제10조(「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의 개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보고"를 "통보"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보고"를 "통보"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 제3조 중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개정규정, 제5조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항·제70조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 제6조의 개정규정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등)	제3조(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등)
①・② (생 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③
의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공연예술진흥세부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	
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	
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계획 및 시행	
결과를 해당 특별시장 · 광역시	
장·도지사에게 <u>보고</u> 하고, 특별	<u>통보</u>
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이	
를 종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	
관에게 <u>보고</u> 하여야 한다. 다만,	<u>통보</u>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의 경	
우에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	
치도지사가 그 계획 및 시행결	
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u>보고</u> 하여야 한다.	<u>통보</u>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9조(보고 등) ① 제36조제1항	제49조(통보 등) ①
에 따라 등록한 국립 공공도서	
관의 장, 시·도지사나 시·도	
교육감 또는 시장・군수・구청	
장은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립 공공도서	
관 또는 관할 등록 공공도서관	
의 관리・운영 현황을 다음 해	
1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u>보고</u> 하여야 한다.	<u>통보</u>
② 시·도지사나 시·도교육감	②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	
36조제1항에 따른 공공도서관	
등록이나 제38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처분을 하면 그 처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u>보고</u>	<u> 통보</u>
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	③
항에 따라 <u>보고</u> 받은 등록 공공	<u>통보</u>
도서관의 관리 • 운영 현황을 공	
개하여야 한다.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보유자"란 제17조제1항 또	3
는 <u>제32조제2항</u> 에 따라 인정	<u>제32조제4항</u>
되어 무형유산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실현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유단체"란 제17조제1항	4
또는 <u>제32조제2항</u> 에 따라 인	<u>제32</u> 조제4항
정되어 무형유산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실현	
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한다.	
5. ~ 12. (생 략)	5. ~ 12. (현행과 같음)
제32조(시•도무형유산 등의 지정	제32조(시・도무형유산 등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	<u>두</u>) ①
역 안에 있는 무형유산으로서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지 아	
니한 무형유산 중 보전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도무	

형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
·도무형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
다. 다만, 시·도무형유산으로
지정하려는 무형유산이 국가무
형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에는 국가유산청장과의 사전 협
의를 거쳐야 한다.

<신 설>

<신 설>

② ~ ⑤ (생 략)

 ⑥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시

 ・도무형유산 또는 시・도긴급

 보호무형유산을 지정할 때에는

--. <u><단서 삭제></u>

- ②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무형유산으로서 국가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무형유산 을 시·도무형유산으로 지정하 려는 경우에는 시·도무형유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국가유산청장에게 그 취지와 내 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국가유산청장은 필요한 경우 시·도무형유산 지정 여부를 재검토하거나 내용을 수정하여 줄건을 시·도지사에게 요구할 수있다.
- <u>④</u> ~ <u>⑦</u> (현행 제2항부터 제5 항까지와 같음)
- <u>⑧</u> 제1항·제2항 또는 제7항--

해당 시·도의 명칭을 표시하여 야 한다.

제33조(보고 사항)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 가유산청장에게 <u>보고</u>하여야 한 다.

1. ~ 4. (생 략)

<u>.</u>
제33조(통보 사항)
<u>통보</u>
1. ~ 4. (현행과 같음)

문학진홍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보고) ① 제21조에 따라	제28조(통보) ①
등록한 국립문학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매년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립	
문학관 또는 관할 등록 문학관	
의 관리·운영, 관람료와 이용	
료, 지도·감독 현황 등의 운영	
현황을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u>보고</u>	<u>통보</u>
하여야 한다.	<u>.</u>
② 시·도지사는 제21조에 따른	②
문학관의 등록이나 제24조제4	
항 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등	
록취소의 처분을 하면 그 처분	
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u>보고</u> 하여야 한다.	<u>통보</u>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2조(행정명령) ① ~ ③ (생	제42조(행정명령) ① ~ ③ (현행
략)	과 같음)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4
에 따른 명령을 하면 국가유산	
청장에게 <u>보고</u> 하여야 한다.	<u>통보</u>
제61조(일반동산문화유산에 관한	제61조(일반동산문화유산에 관한
조사) ①・② (생 략)	조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3
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문화	
유산에 관한 보존·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	<u>통</u>
<u>고</u> 하여야 한다.	<u> </u>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70조(시·도지정문화유산의 지	제70조(시・도지정문화유산의 지
정 및 시 · 도등록문화유산의 등	정 및 시·도등록문화유산의 등
록 등) ① ~ ③ (생 략)	록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위	4
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유산에 대하여 시	
·도지사에게 시·도지정문화	

유산이나 문화유산자료(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지정·보존할 것을 권고하거나, 시·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보호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화유산 지정절차 또는 등록절차를 이행하고 그결과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⑥ (생 략)
- 제73조(보고 등)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가 유산청장에게 <u>보고</u>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 ② (생략)
- 제75조(매매 등 영업의 허가) ① ·② (생 략)
 -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 받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u></u>
⑤·⑥ (현행과 같음)
제73조(통보 등) ①
<u>통</u> 보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75조(매매 등 영업의 허가)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정기적으로 <u>보고</u>하여야 한다. ----- <u>통보</u>-----.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보고) ①제16조에 따라 등	제30조(통보) ①
록한 국립 박물관과 미술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	
장은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립 박물관과	
미술관 또는 관할 등록 박물관	
과 미술관의 관리·운영, 관람	
료와 이용료, 지도·감독 현황	
등의 운영 현황을 다음 해 1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에게 <u>보고</u> 하여야 한다.	<u>통보</u>
②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2
은 제16조에 따른 박물관・미술	
관의 등록이나 제22조제4항 또	
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	
소의 처분을 하면 그 처분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	
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u>보고</u> 하	<u>통보</u>
여야 한다.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제25조(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	②
원으로 조성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u>대통령령으로 정하</u>	7 해당 지방자치단체
는 수입금	의 조례로 정하는 수입금
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	③
도로 사용한다.	<u>.</u>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u>대통령령으로 정하</u>	6 <u>해당 지방자치단체</u>
는 사업에 관한 지원	의 조례로 정하는 용도
④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4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u>대통령령</u>	<u>해당 지방</u>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u>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u>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의3(영상물 촬영을 위한 지	제28조의3(영상물 촬영을 위한 지
원) ① ~ ③ (생 략)	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제2항	4
에 따른 협조 요청에 필요한 사	
항은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u>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u>로</u>
조례로 정한다.	
제28조의4(영상위원회) ①・② (생	제28조의4(영상위원회) ①・② (현
략)	행과 같음)
③ 영상위원회의 조직·운영에	③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u>해당 시·도의 조</u>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례로
<u>시·도의 조례로</u> 정한다.	

지역문화진홍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문화지구의 지정・관리)	제18조(문화지구의 지정・관리)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지	2
구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자치구의 구청장은 <u>대통령</u>	<u>시·도</u>
<u>령으로</u>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	및 대도시의 조례로
지구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시·	
도지사의 승인(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대도시 시장	
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도 또한 같다.	
③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	③
은 문화지구의 유지・보존 및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지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문화지구의 지정 목	3
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	

또는	시설5	린서	<u>대통</u>	흥령령	<u></u>	로
<u>정하</u>	= 바이	마	라 :	해당	지	방
<u> 자치 및</u>	단체의	조례	로	정하는	=	것
) (생	럌)					

- 제19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 기계술위원회의 설립 등) ①·② (생략)
 - ③ 그 밖에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22조(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조성)
 - ① ~ ③ (생 략)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그 가액(價額) 및 품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생략)

<u>해당 지방자치</u>						
단체의 조례로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						
예술위원회의 설립 등) ①・②						
(현행과 같음)						
(3)						
-ท						
<u>해</u>						
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22조(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조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4)						
<u>통보</u>						
⑤ (현행과 같음)						

출판문화산업 진홍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신고) ① ~ ④ (생 략)	제9조(신고) ① ~ ④ (현행과 같
	승)
⑤ 시장등은 신고를 받으면 그	⑤
신고 사항을 시 • 도지사(특별자	
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에게 <u>보고</u> 하여야 한다.	<u>통보</u>
제11조(폐업 및 직권말소) ① (생	제11조(폐업 및 직권말소) ① (현
략)	행과 같음)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폐업	②
신고를 받거나 제3항에 따라 신	
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 경우	
에는 그 사실을 시·도지사(특	
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는 제외한다)를 거쳐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에게 <u>보고</u> 하여야 한	<u>통보</u>
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